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(이하 '심의회')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·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
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 일부개정(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)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심의회 위원 확대·개편(안 제14조제1항)

나. 과태료 조항 및 기준 신설(안 제21조, 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표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심의회는 다음 각 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,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정경제부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3. 국방부
- 3의2. 산업통상부
4. 국토교통부
- 4의2. 기획예산처
5. 국무조정실
- 5의2. 우주항공청

6. 방위사업청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심의회회의 위원) ① <u>심의회</u>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1. <u>재정경제부 제1차관</u> <신 설> 3. <u>국방부 차관</u> <신 설> 4. <u>국토교통부 제2차관</u> 4의2. <u>기획예산처 차관</u> 5. <u>국무조정실 국무2차장</u> <신 설> 6. <u>방위사업청장</u> <신 설>	제14조(심의회회의 위원) ① <u>심의회</u> 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 1. <u>재정경제부</u> 2.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</u> 3. <u>국방부</u> 3의2. <u>산업통상부</u> 4. <u>국토교통부</u> 4의2. <u>기획예산처</u> 5. <u>국무조정실</u> 5의2. <u>우주항공청</u> 6. <u>방위사업청</u> 제2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 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 <신 설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,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제2호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·우주비행체·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경우	법 제21조	150	250	5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	
연 락 처	(055) 856 - 4219